

산업통상자원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 허 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법제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분야 관련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AI 특허행정시스템 개발 총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며,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상표·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고객지원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명칭을 산업재산정보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의 3개 과(반도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를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반도체심사추진단에 2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4명(6급 2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7급 2명)하고, 특허청서울사무소의 효율화를 위해 종전의 관리과와 전산자료과를 통합하여 총괄지원과를 신설하며,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고객지원국장”을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고객정책과장”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시스템과장”을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관리과장”을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과장”을 “산업재산출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과장”을 “산업재산등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출원과장”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 중 “특허심사기획국·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특허심사기

획국·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을 “디지털융합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을 “(전기통신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을 “전기통신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통신기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을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회로, 전력송배전 및 전력공급”을 “전력회로, 전력전송 및 발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화학생명기술심사국)”을 “(화학생명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을 “화학생명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생명기술심사국”을 “화학생명심사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기계금속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을 “기계금속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기계금속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송보관부품, 계측기계”를 “이송보관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정밀부품이송”을 “정밀시험”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51명 중 11명”을 “50명 중 10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을 “각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과장”을 “총괄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를 “직원의 복무·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예산의 집행·결산 및 물품관리

4.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5.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7.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제22조제2항 중 “정보관리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국제출원과장”을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으로 한다.

제8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한시조직

제24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및 소자공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로 및 반도체 응용설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

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기판제조, 패키지공정, 검사기술 및 기판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 제조공정 및 유기소자적층공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별표 1 중 총계 “1,602”를 “1,607”로 하고, 일반직 계 “1,600”을 “1,6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1”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2”를 “794”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09”를 “4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

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02”를 “1,607”로 하고, 일반직 계 “1,600”을 “1,6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1”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17”을 “821”로 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83”을 “382”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를 “68”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을 각각 “14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2”를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를 각각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3”을 각각 “22”로 하고, 행정사무관·사
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
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
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9 가목1) 조직란 1)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
으로 하고, 같은 목 2) 조직란 2)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
심사국”으로 하며, 같은 목 3) 조직란 3) 중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
털융합심사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반
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은 2
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은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4월 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4월 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u>정보고객지원국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산업재산정보국) ① <u>산업재산정보국장</u> ----- ----- -----.
② <u>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u> ----- -----.
③ <u>정보고객정책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u>산업재산정보정책과</u> 장-----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④ <u>정보시스템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u> 장---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⑤ <u>정보관리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u> 장---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u>출원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산업재산출원과</u> 장-----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② (생략)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삭제

8. 특허심사기획국·융복합기술심사국·전기통신기술심사국·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 ⑪ (생략)

제12조의2(융복합기술심사국) ①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⑧ 산업재산등록과장-----
-----.

1. ~ 17. (현행과 같음)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

1.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8. 특허심사기획국·디지털융합심사국·전기통신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

--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

-----.

② 융복합기술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13조(전기통신기술심사국) ①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기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

② 디지털융합심사국-----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 전기통신심사국장-----

-----.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

를 분장한다.

⑥ (생 략)

⑦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 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광학기 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생 략)

⑨ 전자부품심사과장은 반도체 소자, 메모리회로, 전자기기 및 기록·송수신 장치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생 략)

제14조(화학생명기술심사국) ①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화학생명기술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⑥ (현행 제8항과 같음)

<삭 제>

⑦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장-----

-----.

② 화학생명심사국-----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
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
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
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
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
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제15조(기계금속기술심사국) ①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일반
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
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
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장-----

-----.

② 기계금속심사국-----

제16조(특허심판원) ① (생략)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
1명 중 1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하고, 40명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생략)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
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시
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
·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
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
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

제16조(특허심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50
명 중 10명-----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현
행과 같음)

[illegible]

<신 설>

6. (생 략)

④ (생 략)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5. 각종 간행물의 수집 및 반포일자의 증명

6.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관리

7.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초본의 발급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국제출원과장, 컴퓨터심사과장, 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신 설>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

③ (현행과 같음)

제8장 한시조직

제24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

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반도체제조 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 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

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
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
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
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
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및 소자공정 분야의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
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
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
로 및 반도체 응용설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
다.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
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
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 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 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기판제조, 패키지공정, 검사기술 및 기판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제조공정 및 유기소자 적층공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02	1,607	+5
일반직 계	1,600	1,605	+5
고위공무원단	11	12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2	794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409</u>	<u>410</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5</u>	<u>66</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02	1,607	+5
일반직 계	1,600	1,605	+5
고위공무원단	11	12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17	821	+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383</u> ·	<u>382</u> ·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65</u> ·	<u>68</u> ·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35</u> · ·	<u>33</u> · ·	-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7</u>	<u>146</u>	-1
일반직 계	<u>147</u>	<u>146</u>	-1
고위공무원단	<u>12</u>	<u>11</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2</u>	<u>21</u>	-1
일반직 계	<u>22</u>	<u>21</u>	-1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3</u>	<u>22</u>	-1
일반직 계	<u>23</u>	<u>22</u>	-1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	·	·	